

# 정책/POLICY

##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

관련 사항: ACA, ACF, COB-RA, COG-RA, IGT-RA, IRB-RA, JFA-RA, JGA, JHC, JHC-RA, JHF-RA  
 책임 사무실: Chief of Teaching, Learning, and Schools; Chief of Districtwide Services and Supports; Chief of Strategic Initiatives

###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(Bullying, Harassment, or Intimidation)

#### A. 목적

모든 학생은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, 협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

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 소유지에서의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, 협박을 금지하기 위해

모든 학생의 학업 및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관계 중심적이고 환영하며 지원하는 학교 환경 유지에 효과적인 절차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.

#### B. 고려사항

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(Board of Education)는 따돌림/불링, 희롱, 협박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한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.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, 협박은 언어 행위, 신체적 행위, 서면으로의 행위(텍스트/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기기 사용 포함)를 말합니다.

#### C. 입장

1. 교육위원회는 MCPS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학교와 장소, MCPS 버스, 시설 및/또는 학생이 참여하는 MCPS 가 후원하는 활동 또는 전자 기술을 사용한 모든 MCPS 공간에서의 사이버 괴롭힘, 괴롭힘(성희롱 포함), 괴롭힘, 협박 또는 증오 편견 사건을 포함한 언어적, 물리적 또는 서면(전자 포함)으로의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을 금지합니다.

이 정책의 목적과 Maryland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는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또는 위협(Bullying, Harassment, or Intimidation)은 다음을 의미합니다-

- a) 구두, 물리적 또는 서면 행위를 포함한 의도적인 행위 또는 MCPS 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학교, MCPS 버스, 시설 및/또는 다음과 관련된 MCPS 후원 활동 시설 또는 장소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생이 관련된 의도적인 전자 통신 또는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
- b) 학생의 교육적 혜택이나 기회 및 수업 이행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다음과 같이 침해하는 경우 -
  - (1) 교육위원회 정책 Policy ACA, *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* 에서 명시된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특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
  - (2) 학생의 개인적 신체부위 노출하고 학생의 묘사 또는 설명이 포함되거나 성적 접촉 관련 행위 중을 포함한 성에 관련된 경우. 또는
  - (3) 협박 또는 심각하게 겁을 주는 행위
    - (a) *개인적인 부위(Intimate parts)*란 Annotated Code of Maryland, Education Article, §7-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기노출, 음부, 엉덩이 여성 유두를 의미합니다.
    - (b) *성적 접촉(Sexual contact)*이란 Code of Maryland, Education Article, §7-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식기와 생식기, 구두/입과 생식기, 항문과 생식기, 구두/입과 항문을 포함한 같은 또는 다른 성의 사람들 간의 성적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.

3. 이 정책의 목적과 Maryland 주 교육부(State Department of Education-MSDE) 지침에 따라, 다음 정의는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(Bullying) (사이버 불링 포함), 괴롭히기 또는 위협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

- a)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 폭력(Bullying)이란 항목 C2 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충족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으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-
- (1) 힘의 불균형(자신의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또는 학문적 힘을 사용하여 타인을 통제, 배제 또는 해치는 괴롭힘을 하는 개인); 그리고
  - (2) 반복(왕따 행동이 두 번 이상 발생하거나 수집된 증거에 따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)
- b) 사이버 불링, 사이버 폭력(Cyberbullying)이란 항목 C.2와 항목 C.3.a에서의 금지기준에 부합하는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과 개인이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신 방법을 통한 휴대용 통신 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(1) 사이버 불링에는 당혹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개인 또는 사적인 정보를 전송, 게시 또는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
  - (2) 사이버 불링/폭력은 학교 환경으로 전환될 경우,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; 이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며; 또는 대면 또는 가상 온라인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적 환경을 방해합니다.
- c) 전자 커뮤니케이션(Electronic communication)이란 모든 전화(telephone), 컴퓨터(computer), 휴대 소통 통신기기(portable communication device) 등의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.
- d) 괴롭힘(Harassment)이란 Board Policy ACA, *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* 에 정의된 대로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섹션 C.2의 금지된 행위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개인을 모욕, 조롱 또는 비하하는 실제 또는 Board Policy ACF, *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*, 또는 Board Policy ACI, *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* 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인지된 부정적인 행동 및 학생의 은밀한 부분이 노출되거나 성적 접촉 행위로 학생에 대한 설명 또는 묘사를 포함한 본질적 성적인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.
- e) 협박(Intimidation)이란 항목 C.2의 금지 행위 기준을 충족하고, 위협하거나 두려움 및/또는 열등감을 유도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모든

커뮤니케이션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보복은 협박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4. 교육위원회는 더 나아가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, 희롱, 협박, 위협 행위를 보고한 개인, 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, 협박이나 위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, 또는 목격자, 방관 및 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, 협박 및 위협 행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의 보복과 양갈음을 금지하지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.
5. 이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은 신체적(때리기, 밀기, 밀치기), 언어적(놀리기, 협박하기, 강압하기, 놀림거리로 만들기, 경멸적인 이름으로 부르기) 또는 관계적인 것(소문 퍼트리기, 왕따 또는 소외하기, 외면하기)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.

#### D. 전략의 시행

1. 희롱과 협박을 신고한 신고인 대상의 보복과 양갈음을 방지하고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의 예방은 학생, 행정직원과 교직원과 더불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구 전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. 표적이 된 개인(Targeted individuals-이하 "피해자(complainants)")와 왕따/불링/학교 폭력이나 괴롭힘,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(이하 "가해자(respondents)")은 광범위한 건강, 안전 및 교육 위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2. MCPS 는 교직원들에게 사이버 불링, 희롱 및 협박을 포함한 모든 왕따/불링/학교 폭력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의 기회와 학생,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교직원은 적절하게 준비하여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 폭력, 희롱 및 협박 행위(Bullying, Harassment, or Intimidation)를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 폭력, 희롱 및 협박이 일어난 경우 적절하게 개입하고 대처방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인계를 합니다. 학교에서의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과 협박을 신고한 사람에의 보복과 양갈음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구 전체의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.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3. 전문적 학습

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을 사용하여 행정관리와 교직원을 위한 연례 전문 학습 제공

- a) 왕따, 괴롭힘 또는 협박의 만연, 원인 및 결과
- b) 특히 점심, 휴식시간 및 복도 전환과 같은 비교육적 활동 및 라커룸과 같은 공간에서의 성인 가시성의 중요성
- c)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왕따/불링, 괴롭힘 또는 협박 사건을 줄이기 위한 다층적, 회복적 접근
- d)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문화적 대응하는 학교 및 교실에서의 실행, 사회/정서적 학습 통합, 트라우마에 기반한 실행, 회복적 접근 방식을 통해 모든 학생이 환영받고, 포용되고, 연결되어 있다는 느끼도록 합니다.
- e) 인식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–
  - (1)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및 위협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대인 피해 학생, 피의자 및 방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.
  - (2) 연구에 기반을 둔 전략방법과 후속조치(remedial measures)의 사용과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또는 협박을 예방하기 위해 행동에 따른 결과(consequences)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,
  - (3) 교육위원회 정책 Policy ACA, *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* 에서 명시된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또는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을 식별하고 지원 조치를 제공합니다.

#### 4. 예방과 교육

MCPS 는 모든 학년에서 긍정적인 행동과 학교 향상 노력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다음을 포함하여 신체적,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긍정적이며 안전하고 회복적인 학교 분위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구 전체,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- a)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사이버 풀링, 괴롭힘, 협박과 불링 보고서 양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교육,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종합적 보건 교육
- b) 학부모, 자원봉사자 및 광범위한 지역사회에게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괴롭힘 또는 위협의 만연,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; 잠재적인 공중 보건 위험으로써의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괴롭힘 또는 위협의 의미; 따돌림, 괴롭힘 및 협박 인식 및 신고;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.
- c)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는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문제이며, 피해자와 가해자, 방관자인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건강과 정신 건강 자원과 협력.
- d) 괴롭힘, 괴롭힘 또는 위협 예방 노력에 학생의 참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만 제기자와 응답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괴롭힘, 괴롭힘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행동 개입, 안전 및 웰빙 계획, 따돌림, 괴롭힘 또는 위협의 대상이 되거나 취약한 동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상호 존중;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민감성.

5.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 절차

- a) MCPS 는 학교에 간편하고 안전하며 나이에 적절한 비공개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b) 학생, 교직원, 학부모/보호자/후견인에게 *MCPS 230-35, 희롱 및 협박 행위/왕따 양식(Bullying,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)*의 필요여부를 포함한 보고절차를 각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.

(1) MCPS 는 약자 괴롭히기/왕따, 희롱 및 협박행위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지지합니다. MCPS 는 이 신고절차는 피해자와 가해자, 방관자인 학생 모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.

(2) 학교장/디렉터 또는 대리인은 해당 양해각서와 MCPS Regulation COB-RA, *Incident Reporting* 에 따라 법 집행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 법 집행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.

(3) Maryland 법에 따르면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, 협박을 신고한 학교 고용인은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괴롭힘 또는 위협 행위를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6. 약자 괴롭히기/왕따, 희롱 및 협박 행위신고 절차

- a) 학교장/대리인은 모든 약자 괴롭히기/왕따, 희롱 및 협박 신고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모든 대상자의 현재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포함한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며 공정한 조사를 즉시 실시합니다.
- b) 조사가 완료되면, 학교장/대리인은 적절한 지원조치와 행동에 따른 적절한 결과 적용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폭력, 괴롭힘 또는 협박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c) 학교장/대리인은 법 집행 기관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폭력, 괴롭힘 또는 위협 보고서에서 확인된 모든 학생의 부모/보호자에게 보고서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연락합니다.
- c)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지은 후에도, 교직원들은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/학교폭력, 괴롭힘 또는 협박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와 개별 및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.

7. 결과와 개선 행동

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, 보복 또는 보복에 가담한 사람,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또는 협박에 대해 거짓된 비난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Board Policy ACA, *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*; Board Policy JGA, *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-being Plan*; and MCPS Regulation JFA-RA, *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* 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며 일관되게 행동 중재 전략 및 교정 조치를 적용합니다.

8.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를 위한 개입과 도움, 지원 서비스

- a) MCPS 는 트라우마 정보 및 회복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불만 제기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적/정서적

지원의 연속체를 개발합니다. 이에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왕따/불링/학교 폭력, 괴롭힘 또는 위협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도움 조치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도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- b) 적절한 경우, 불만 제기자/피해자와 가해자는 회복력을 구축하고, 사회적 연결 및 동료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고, 괴롭힘의 추가 상황 가능성을 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, 학생의 안전감과 사회적 연결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 - c) 만약 학생이 약자 괴롭히기/왕따, 희롱 및 협박에 관한 상담을 원할 경우, 교직원은 실질적이며 안전하고 나이에 적합한 개별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  - d) MCPS 는 학교와 커뮤니티에 있는 피해자, 가해자와 방관자를 돕는 서비스 리스트를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.
9. 교육감은 MCPS 에서 조사절차와 신고절차를 숙지하는 Maryland State Department Education(MSDE)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,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신고와 조사 절차, 학부모/후견인 또는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의 알리는 절차, 왕따 피해자, 가해자, 방관자에게 제공되는 도움, 처벌과 교정행위, 이 절차를 공표하는 절차, 사건발생 데이터 모니터링을 포함한 이 정책을 적용한 규정을 개발합니다.
10. 교육감은 이 정책을 적용하고 학교에서의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 학습 활동을 개발합니다.
11.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정책 적용을 위한 모든 정책은 정보항목으로 교육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.

**E. 바라는 결과**

학교는 약자 괴롭히기/왕따/불링, 희롱 및 협박(사이버 불링 포함)이 없는 지원적인 교육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움과 처벌 등의 예방과 행동 중재, 안전과 웰빙 전략을 제공합니다.



F. 검토와 보고

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.

관련 자료:

*Annotated Code of Maryland, Education Article, §7-303.1, §7-424, §7-424.1;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.08.01.15;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aryland's Model Policy to Address Bullying, Harassment, or Intimidation 2021 Update; A Student'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MCPS;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;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; 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*

**정책 변경사:** 2010년 3월 9일 결의안 채택번호(Resolution No). 132-10에 따라 새 정책 적용; 2016년 11월 15일 결의안 채택번호 489-16에 따라 수정; 2017년 6월 26일 결의안 채택번호 319-12에 따라 기술적 수정; 2018년 6월 25일; 결의안 채택번호 351-18에 따라 기술적 수정; 2022년 3월 8일 결의안 채택번호 113-22에 따라 수정.